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적 쟁점

이 상 문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1. 생각해 보기

논문은 쓰지도 않고...국책연구원 '도덕적 해이' 심각

[JTBC] 입력 2016-05-03 10:26

안내 ▶ 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연구 윤리 위반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과급이나 승진 평가에서 가산점을 얻기 위해 공공연히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감사원이 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MBN

서울대 교수 논문표절로 첫 사직

입력 2013.03.07. 22:07 수정 2013.03.07. 22:07 댓글 0개



【앵커멘트】

서울대 교수가 논문 표절로 개교 이래 첫 사직을 했습니다.

상아탑이 논문 표절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논문 표절이 밝혀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기무 교수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연합뉴스

조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연구비 10억원 타낸 교수

입력 2017.09.06. 16:20 댓글 153개

| 법원, 사립대 윤모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제자를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기관 용역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06년부터 8년 3개월 동안 정부기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자 20여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49)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과 직접 계약해 학교 당국 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했다.

이 판사는 "교수 업무 주 허위의 연구수행은 비자해 대학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간에

4. 연구부정행위의 법적 정의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 고등교육법 -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6. 연구공동체의 전 이해 : 좋은 연구와 사회적 책임

(고려대학교 윤태웅 교수) 좋은 연구란 무엇인가? 좋은 연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직한 연구실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이 연구윤리의 핵심 논점이어야 하리라 여긴다. 논의의 주체는 연구자 공동체다. 연구윤리 전문가가 판관의 위치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연구윤리를 개인의 도덕적 잘잘못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연구윤리는 구조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며, 문화의 문제다. 대학원생이 연구실에서 고통 받는 게 지도교수가 꼭 악당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선 단순히 서 있는 자리가 다를 뿐인 보통의 교수가 보통의 학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악당이 아닌 보통

교수가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된다면, 그건 그 교수한테도 안타까운 일이다. 다양한 연구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 갈등상태에 있는 구성원들을 중재하고 필요에 따라선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 변경 등의 도움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건설적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논점이다. 그런데도 연구윤리 문제의 일부로 별로 언급되지 않는 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다루기가 어려운 탓이다. 규범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기준도 모호하다. 때론 행위보다 태도와 관련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연구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 하지만 전문 연구의 막대한 영향력,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 사회문화적 편향성, 연구자의 독점적 지위, 연구의 공공적 성격을 떠올리면,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논점이다. 정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을 멈출 순 없다.

7. 연구윤리의 과제와 미래

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학술진흥법 -

연구자는 시민사회(시민윤리)의 가장 정점에 있다.

타인을 지배하는 자는 강하지만, 자신을 지배하는 자는 더 강하다. - 노자 -

연구윤리의 12가지 원칙

연/구/윤/리

01 / 정직성 (Honesty)

실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조작, 왜곡하지 않아야함

02 / 신중함 (Carefulness)

연구 수행 시 신중함을 기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함

03 / 개방성 (Openness)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 데이터 및 결과, 방법 등 연구내용을 공유

04 / 자유 (Freedom)

연구주제 및 가설 수립의 자율성

05 / 공로 (Credit)

연구참여자의 공로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함

06 / 교육 (Education)

후학의 양성과 대중에의 과학적 지식 전파

07 /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의 악영향을 끼치는 연구는 피하고, 공공의 이익의 창출을 위해 노력함

08 / 합법성 (Legality)

연구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을 준수함

09 / 기회 (Opportunity)

과학적 자원의 사용과 직업적 기회는 공정하게 보장됨

10 / 상호존중 (Mutual Respect)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 항상 존중해야함

11 / 효율성 (Efficiency)

연구자에게 주어진 과학적 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12 /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subjects)

생명대상 실험 시 피험자(체)에 대한 존엄성 존중이 필요



출처

1. 이인재 "연구윤리, 왜 필요한가?" 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2, 195-204, May 2012
2. Shamoo AE, Resnik DB.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3



Creative Commons License

< 연구부정 사례 1 > 출처 : 연합뉴스 2017년 10월 31일 06:00

'표지갈이' 대학교수들 유죄 확정 첫 판결…무더기 벌금형

남의 책에 공저자로 이름 넣은 국립·사립대 교수들 벌금 1천만~1천500만 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펴내고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2년 말 학계의 불법적인 표지갈이 관행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적발한 이후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1일 저작권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2명도 벌금 1천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실제 저작자의 동의를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

원 업적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1심은 "책이 최초 발행된 후 오·탈자를 수정해 다시 발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은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공표(公表)' 행위가 아니다"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법은 남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꿔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데, 공표를 최초 발행으로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대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저작권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벌금 1천500만원을 새로 선고했다.

김씨 등은 실제 저작자가 동의한 가운데 공저자로 책을 발행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비슷한 '표지갈이' 수법으로 연구성과를 부풀린 국립대 교수 김모(44)씨와 임모(35)씨도 같은 날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2월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무책임 대학 내 기술탈취,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 개정해야

기술개발은 대학이, 기술탈취 검증과 책임은 기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집중 조명된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국립대 연구윤리 규정에는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를 확인 또는 제재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8곳의 연구윤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표절 심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는 반면,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는 점검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표절심사 이외에 논문 및 보고서 등에서 특허나 상대방의 연구성과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규정은 없다”며 “(서울대가 산학과제로 만든 연구성과물의) 특허침해 여부는 해당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대학은 기술탈취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탈취로 인한 책임에서 회피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에 의하면 “연구결과물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탈취 문제는 대학 뿐 아니라 관리당국인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5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지만 정작 기술탈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기술탈취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연구윤리 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의 기술탈취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을 통한 기술탈취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 의원은 교육부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논문표절은 타인의 논문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베껴서 사용하는 지식절도 행위라면, 기술탈취는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원 기술자의 기술(지식)과 재산을 모두 빼앗는 명백한 절도행위”라며 “감독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인 대학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만큼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남의 기술 자료를 임의로 가져다 쓰는 일은 엄연한 절도행위인 바 이에 대해 대학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산학 협력단 모 교수가 대기업이 탈취해준 기술을 기술탈취 확인도 없이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산학협력과제와 특허에 사용하고, 해당 교수가 지도한 학생은 자신의 석사논문에 그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연구부정 사례 3 > 출처 : 한국일보 2017년 10월 27일 09:35

[단독] 한국외대, 자기표절 논란 교수 채용에… 교수 집단반발

“본인 연구 출처 없이 중복 게재”
학교 측 “연구윤리위 무혐의 결론”
내달 총장선거 앞두고 잡음 증폭



한국외대 신입 교수가 채용 당시 연구성과로 내세운 논문 대부분이 자기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내 교수 30여명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무혐의’ 결론에 반발하는 등 채용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외대 교수 28명은 같은 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의뢰서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A교수가 채용 당시 연구성과로 제시한 영어 논문 3편이 역시 연구성과로 제시한 일본어 논문 3편을 단순 번역한 ‘중복 게재’라는 문제제기로, “영어논문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연구성과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교수 자리를 두고 A교수와 경쟁했던 한 응모자는 “표절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참고문헌에조차 본인 연구를 기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채용과정의 연구윤리 위반은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복수의 관련 전공 교수들은 “A교수가 제출한 논문 20편 중 15편이 일본어 저서에 있는 내용을 일본어 논문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한·일·영어를 서로 번역해가며 자기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가령, 2016년 제출한 영어논문의 14개 예문 및 5개 도표가 2015년 본인의 일본어 저서 한 챕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두 저술의 연구목적과 결론이 동일한데 출처 표시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내 연구윤리위원회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인 면에서나 동일한 논문으로 볼 수 있다”던 예비조사 결과와 달리 올 6월 본 조사에서는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관련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수 일각에서는 “신임교수의 친척과 선후배 관계인 퇴임 교수들을 외부 조사위원으로 초빙해 결과가 왜곡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전문가들이 모여 판단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학계에서 통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 별개의 논문”이라고 밝혔다. A교수 또한 “현재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채용과정을 둘러싼 잡음은 11월 총장선거를 앞두고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일부 교수들은 “이사회 위원 다수가 교수 채용에 반대했음에도 총장이 강행했다”며 “재선을 노리는 총장이 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연구부정 행위를 주장하는 교수들은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비 횡령’ 서울대 교수 검찰에 피소

미국 본인 집을 ‘숙소’ 둔갑시켜
IBS 연구단장 시절 출장비 결제
단장직 해임…대학 “징계 미검토”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초과학연구원 (IBS) 연구단장에서 해임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IBS는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A교수의 연구비 유용을 확인하고 지난달 단장직에서 해임했다. 이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IBS는 2011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과기부 유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IBS의 총 연구비는 올해 기준 2,000여억원이며 연구단별로 평균 70여억원이 배정돼 있다. A교수가 맡고 있던 연구단장직은 연구성과가 뛰어난 과학자가 선정되는 자리로 연구단 인력 구성, 세부 연구내용, 예산배분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IBS는 A교수의 연구비 카드 결제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출장비를 결제한 사례가 많은 데 주목했다. 조사 결과 A교수가 예약한 숙소 중 대부분이 미국 동부에 있는 A교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IBS는 A교수가 본인 집을 에어비앤비로 예약하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교수가 이 같은 수법으로 쓴 출장비의 규모와 유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A교수가 출장비로 쓴 돈은 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A교수가 IBS에서 횡령 혐의로 해임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가 아닌 IBS에서 벌어진 일이고,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